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석규 의원)

의안 번호	4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의자 : 김석규, 송은영, 정숙남,
공유신 (4명)

1.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안 제12조제10항)

나. 퇴직준비휴가 신설 (안 제12조제11항)

다. 임용시험 종사 공무원 휴무 규정 신설(안 제12조제1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은 금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일
2.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일

⑪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⑫ 의장은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항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21. 10. 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